

공공기관 데이터 공유 의무화로 칸막이 없는 정부 실현

- 「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 6월 20일(화) 국무회의 의결
- 과학적 행정을 위한 ‘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’ 구축 기반 마련

-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유 의무화를 위한 데이터 공유·관리 체계가 확립되어, ‘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’ 구축 기반이 마련된다.
- 행정안전부는 「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20일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 - 개정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터가 막힘없이 공유·활용되도록 하여 과학적인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추진을 활성화하고 국정과제인 ‘디지털플랫폼정부’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.
- 특히,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데이터를 모든 공공기관에서 공유·활용할 수 있도록 ‘공유데이터’로 구축·관리·연계하도록 원칙을 제시하여,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데이터 활용 기반을 대폭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.

* 공공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·가공한 데이터

- 행정안전부는 부처협의(4월19일~5월3일), 입법예고(4월27일~5월31일)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하였으며, 향후 국회에서 심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.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《 공유데이터 기반 데이터 공유·관리 체계 마련 》

- 공공기관별 원천데이터를 가공한 개별 공유데이터의 구축·관리와 연계를 의무화했다.
 - 이에 따라, 의사결정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획기적으로 늘어난다.
 - 공공기관은 모든 데이터를 공유데이터로 구축·관리하고,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해야 한다.

- 다만, ‘명시적인 규정’ 등으로 목적외 이용 금지를 정한 경우는 제외된다.

※ (현행) ‘데이터 등록’ 제도를 운영하였으나, 의무가 아닌 기관 재량에 따라 등록이 이루어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는 실질적으로 어려웠음

○ 공공기관이 공유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도 규정하였다.

-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위조·변조·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.

○ 공유데이터 구축·관리·연계에 관한 공공기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.

- 행정적·기술적·재정적 지원과 데이터 공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.

○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활용에 관한 규정도 신설하여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도 적극 공유·활용하도록 했다.

《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기능 강화 》

□ 데이터기반행정이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, 데이터가 막힘없이 공유되도록 법의 적용 대상 기관을 헌법기관까지 확대하였다.

○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기관도 법의 적용 대상인 ‘공공기관’의 범위에 포함한다.

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이 정착되도록 책무를 강화하였다.

○ 법령 또는 조례·규칙 제·개정, 중장기계획 수립·시행, 예산편성·집행 업무 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.

□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,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모든 기관에서 공유·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·관리 체계가 확립되고, 데이터의 공유·제공을 확대하여 ‘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’ 구축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한창섭 차관은 “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전면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있다”며, “데이터 기반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인 행정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정부혁신조직실 공공데이터정책과	책임자	과 장	하인호 (044-205-2461)
		담당자	사무관	채 희선 (044-205-2466)

□ 개정 목적

- 기관별 보유 데이터의 공유·활용 활성화로 과학적 의사결정 추진을 강화하는 범정부 데이터 공유 체계 재정비를 통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 필요

※ 관련 국정과제 : (국정과제 11)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

□ 주요 내용

- 공유데이터*의 개념 규정 및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**(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3호가목 신설)
 - *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다른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·가공한 데이터
 - **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 처리기관 포함
-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활용(안 제4조의2 신설)
- 공유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의 공유·관리체계 마련(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)
 - 공공기관의 장에 원칙적으로 공유데이터를 구축·관리하고,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 의무 부여
 - 공유데이터 활용 시의 준수사항 규정
 - 공유되지 아니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제공 요청 및 데이터 제공 시 공유데이터로 구축·관리 및 연계 의무 부여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의 제·개정, 중장기 계획의 수립·시행, 예산의 편성·집행 등에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의무 부여(안 제3조제3항)
-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기능 강화(안 제18조제1항)
-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역할 확대(안 제21조제2항)
- 데이터기반행정 운영실태 평가 운영(안 제22조) 및 면책(안 제26조), 업무의 위탁·위임(안 제27조 및 제28조)

항 목	현 행	개 정 후
‘공유데이터’ 정의 신설	해당 없음	(공유데이터) 공공기관 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·가공한 데이터
‘공공기관’ 범위 확대	(공공기관)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,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,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, 그 밖의 법인·기관 및 단체	(공공기관)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추가, 위임규정 신설
데이터기반행정 정착을 위한 책무 추가	해당 없음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령·조례·규칙 제·개정, 중장기계획 수립·시행, 예산편성·집행 수행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의무 부여
데이터 공유·제공 규정의 우선 적용	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우선 적용(일반법적 지위)	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·제공에 한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이 있더라도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
데이터의 가명처리 및 활용	해당 없음	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정책수립 등을 위한 과학적 연구 및 통계작성 등에 활용 시 가명처리하여 활용 가능
데이터 공유 체계 정립	- 데이터의 연계·제공·공동활용에 필요한 체계 구축, 전문인력 양성을 기본계획에 포함 - 해당 없음	- 데이터의 공유·제공·활용에 필요한 체계 구축, 전문인력 양성을 기본계획에 포함 - 공유데이터 구축, 데이터 품질·표준 등에 관한 계획을 시행계획에 포함

	■ 5가지 분야 관련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데이터를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음 ■ 해당 없음 ■ 해당 없음 ■ 해당 없음	■ 비밀, 국가안전보장, 목적 외 이용 금지(명시적인 규정)에 해당하는 데이터 외에는 연계·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데이터 구축·관리 의무화 ■ 구축·관리되는 공유데이터는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 의무화 ■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계된 공유데이터를 가공·결합하여 다시 저장·관리 가능 ■ 정부는 데이터 공유기반 마련에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고, 공공기관은 데이터 공유 활성화 사업 추진 가능
공유데이터 활용시 준수사항 추가	■ 해당 없음	■ 공공기관의 장이 공유데이터 활용시, 공유데이터 제3자 제공 금지 및 안정성 확보 조치를 취해야 함
제공 데이터의 공유데이터 구축·관리 의무 부여	■ 해당 없음	■ 공공기관의 장은 제공한 데이터를 공유데이터로 구축·관리하여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할 것을 의무화
데이터 공유 거부시 위원회 조정기능 추가	■ 해당 없음 ■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행해야 함	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공유데이터 구축·관리 및 연계를 하지 않는 경우 조정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음 ■ 공공기관의 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이행해야 함
데이터 통합관리플랫폼 기능 강화	■ 행정안전부장관이 플랫폼 구축·운	■ 행정안전부장관이 플랫폼 구축·운

	영시 전자적시스템을 통해 수집·관리되는 데이터의 연계 및 공동활용이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도록 함	영시 공유데이터 연계 관련 기술적 지원 및 공유데이터 저장·관리,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기능 추가
데이터 기반행정 전문기관 역할 확대	■ 해당 없음	■ 기본계획·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, 데이터 공유 활성화 사업 추진,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·운영 지원 업무를 추가함